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92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12.

발 의 자 : 박성훈·이인선·박충권
신성범·김기웅·정동만
이현승·고동진·김성원
서지영·김승수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고,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·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하며, 법 위반 시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학원 유명 강사와 현직 교원 간 시험 문항 거래 사례가 문제되면서 사교육 시장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 특히 수능 및 각종 평가와 관련된 시험 문항이 금전적 대가를 통해 사적으로 유통되는 경우 특정 학원 또는 강사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입시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교원의 학원 교재 등 교습자료의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 등

교습행위 금지를 명확히 하고, 학원설립·운영자, 강사 등이 이를 요구·의뢰·교사 또는 협력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등록말소 또는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조, 제4조 및 제17조).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중 “제한”을 “제한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과외교습을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”로 하며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과외교습
2. 학교교과교습학원, 교습소 등의 학습자를 위한 교습자료의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, 컨설팅 등 교습행위

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학원설립·운영자(강사를 포함한다),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제3조에 따른 교원에게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구·의뢰·교사하거나 그 행위에 협력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법률 제21501호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1호의2”를 “제1호의3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제1호의2 및 제1호의3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

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1호의2”를 “제1호의3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제1호의2 및 제1호의3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3조에 따른 교원에게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구·의뢰·교사하거나 그 행위에 협력한 경우

1.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3조에 따른 교원에게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구·의뢰·교사하거나 그 행위에 협력한 경우

1.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3조에 따른 교원에게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구·의뢰·교사하거나 그 행위에 협력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률 제21501호 학원의
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
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 제17조(행정처분) ① 교육감은 학
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 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
 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
 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
 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
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
 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
 여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<신설>

6의2. (생략)

7. ~ 12. (생략)

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
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
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
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
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

법률 제21501호 학원의
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
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 제17조(행정처분) ① -----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6의2.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
제3조에 따른 교원에게 같은
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행위를 요구·의뢰·교
사하거나 그 행위에 협력한
경우

6의3. (현행 제6호의2와 같음)

7. ~ 1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<p>2. ~ 6. (생략) ④ (생략)</p>	<p>제1호의2와 같음) 2. ~ 6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